

2025년 제1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재공고

2025년 제1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5일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 부서
지방농업연구소 (일반임기제)	1명	- 농산물가공연구 - 진도홍주 연구 - 향토산업육성사업 연구 등	농수산유통 사업소
지방시설(토목)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 각종 개발사업 추진 - 토목사업 추진 등	건설과

□ 임용 기간: 2년(근무실적 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경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임용 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 검정

3. 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도군 내로 되어 있는 자
(2025.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 기타: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

- 임용분야 자격은 분야별 필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분	자격기준 *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비고
지방농업 연구사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 식품공학 및 식품가공학, 기타 관련 학위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지방시설 (토목)주사보 (일반임기제)	필수요건	국가기술훈격법상 채용 예정분야 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요건 (1개 이상)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실무경력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4. 시험 시행 일정

- 가. 시험명 : 2025년 제1회 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5. 1. 25.(토) ~2. 5.(수)	'25. 2. 3.(월) ~2. 5.(수)	'25. 2. 7.(금)	'25. 2. 12.(수)	'25. 2. 13.(목)

- 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등

가. 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을 출력
- 접수 기간: 2025. 2. 3.(월) ~ 2025. 2. 5.(수)
- 접수 장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총무과(3층)
-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제출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반드시 접수처에 유선 연락(☎ 061-540-3222, 서류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우표부착, 수신인 주소 및 성명 정확히 기재)를 함께 우편 송부 /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붙임1)

- 응시수수료: 7천원

[방문 접수] 진도군 수입증지 부착(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우편 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구입)

② 이력서 1부 (붙임2)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붙임4)

⑤ 주민등록초본 1부

⑥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용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 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류(관련분야 포트폴리오, 계약서, 보수내역 등) 제출 시 심사를 통해 경력인정여부를 결정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학력, 경력 및 자격증은 제출된 증빙자료만 인정함.

⑦ 관련분야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제출
-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 (붙임 5)

⑧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 제출한 경력에 대해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경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

6. 임용신분 및 보수

가. 임용기간

- 2년 /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 연장·해지 시 반영

나. 계약체결

- 최초 : 결격사유 조회 후 해당 없을 시 임용 약정
- 연장 :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다. 임용신분 : 일반임기제공무원

라.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직무능력과 경력 등을 평가하여 보수 범위 내에서 결정

7.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8. 응시자 유의사항

- ①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응시자는 응시표,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최종 면접시험)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⑥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⑦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⑧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⑩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전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